

의안번호	제 17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월 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의 지역 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조정하고,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 조정 (안 제6조제4항)
  - (현행) 100분의 30 → (개정) 100분의 50
- 채권 매입대상 기준 상향 (안 별표 1)
  - (자동차 신규등록)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,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6/100 <삭제>
  - (자동차 이전등록)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,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/100 <삭제>
  - (각종 계약체결) 총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면제 → 2,000만원 미만 면제
- 공채 매입 면제 대상 추가 (안 별표 2)
  -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에 '배우자'를 추가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"%"를 "퍼센트"로 용어 정비 (안 제4조제2항, 제8조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0%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전단 중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분 야 별	매 입 대 상	매 입 기 준
1. 자 동 차 신규등록	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,600cc 이상 ② 2,000cc 이상	취득세과표의 8/100 취득세과표의 12/100
	나.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	취득세과표의 3/100
	다.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	취득세과표의 3/100
	라.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,000cc 이상	취득세과표의 2/100
	마.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	취득세과표의 1/100
	바.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	취득세과표의 1/100
2. 자 동 차 이전등록 (시도만을 달리 하는 변경등록은 제외)	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,600cc 이상 ② 2,000cc 이상	취득세과표의 4/100 취득세과표의 6/100
	나.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	취득세과표의 1.5/100
	다.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	취득세과표의 1.5/100
	라.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,000cc 이상	취득세과표의 1/100
	마.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	취득세과표의 0.5/100
	바.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	취득세과표의 0.5/100

분 야 별	매 입 대 상	매 입 기 준
3. 기타 허가 및 등록	가. 도로·하천·구거부지의 점용허가 (1년이상 장기허가하는 최초 점용료 부과시만 매입)	점용료부과액의 5/100
	나.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 ① 농지(전,답)  ② 임야,잡종지,초지,과수원등 기타지목	m <sup>2</sup> 당 1,500원  동지역 : m <sup>2</sup> 당 3,000원 읍·면지역 : m <sup>2</sup> 당 1,500원
	다. 골프장 등록	m <sup>2</sup> 당 60원
4. 각종 계약체결 (자치단체 전액 출자·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)	가. 공사도급계약, 용역계약 (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)	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.5/100
	나.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계약 (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)	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.5/100

※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,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,000원단위로 계산

## 공채의 매입면제대상(제8조 관련)

구 분	면제대상 및 내용
1. 기관·단체	<p>가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(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)</p> <p>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·출연한 법인</p> <p>다.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</p> <p>라.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</p> <p>마. 「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과 「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</p> <p>바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</p> <p>사. 「민법」·「상법」 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·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하여 수행하는 법인(다만,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공채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)</p> <p>아. 「정당법」에 의한 정당</p> <p>자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</p> <p>차. 제사, 종교, 학술, 예술,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중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하여 관련부처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</p>

구 분	면제대상 및 내용
2. 사업·행위	<p>가.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</p> <p>나.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)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(1인 1대에 한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</li> <li>(2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</li> <li>(3)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</li> <li>(4)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</li> <li>(5)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</li> <li>(6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</li> </ol> <p>다. 주민 직영사업</p> <p>라.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의 농어가주택건축 및 농·임·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(단,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과 농·임·어업의 범위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·제2호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,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다.</p> <p>마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</p> <p>바. 일반운영비,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에서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의 구매</p> <p>사. 「석탄산업법」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도로·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, 토지형질변경허가</p> <p>아.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·허가·계약</p> <p>자. 천제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개조·수선 및 대체취득시의 등록, 허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)</p> <p>차.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의 신규등록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)</p> <p>카. 법인 합병 및 분할시의 자동차 이전등록</p> <p>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,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.</li> <li>2.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.</li> <li>3.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</li> </ol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<u>10%</u> 범위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퍼</u> <u>센트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<u>100분의 30</u>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100분의 50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공채매입 면제) ① (생략)</p> <p>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<u>50%</u>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</p>	<p>제8조(공채매입 면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.</p>

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4. 지방채의 차환
5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
6. 명예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6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

### □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기금 설치 조례

제7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충청북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.

1. 도나 시·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나 시·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
2. 도나 시·군 또는 도나 시·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(이하 “지방자치단체등”이라 한다)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

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.

④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.

**제8조(공채매입 면제)**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공채의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.

#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및 공급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수입: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, 예탁금·융자금 이자 회수 수입
- 지출: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

## 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, 별표 1, 별표 2
-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, 제7조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: 2023년 ~ 2042년 (20년간)
  - ※ 채권 상환기간: 5년거치 일시상환, 융자 상환기간: 5년거치 10년상환
- 재정수반요인
  -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: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권 매출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(1.97%) 및 매입 대상 기준 상향에 따른  $\Delta$ 10.5% 감액 적용
  - 채권 이자 상환: 발행이율 연 2.5% 복리 적용, 2028년부터 상환 개시
  - 예탁금, 융자금 이자수입: 융자이율 3.0% 적용
    - ※ 예탁금, 융자금: 최근 10년간 예탁 및 융자 평균금액 적용

### 나. 추계 결과

- 향후 20년간 수입 65,133백만원 감소, 지출 43,477백만원 감소 예상
  -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: 111,333백만원 감소
  - 예탁금 이자수입: 28,875백만원 증가
  - 융자금 이자수입: 17,325백만원 증가
  -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금액: 111,333백만원 감소
  -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금액: 67,856백만원 증가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: 붙임

## 6. 작성자: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송 병 무

